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90th March 2016

CONTENTS

WHERE IS GRACE CHANG?
봄을 기다리며

COVER STORY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

FTA NEWS
홍콩 경유 수입물품의 한-중 FTA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

VOICES FROM THE FIELDS
반덤핑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I
덤핑마진 계산방법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례로 알아보는 품목분류⑩
생맥주와 용기(PUB KEG)는 함께
분류될 수 있을까?

신한 소식
신한관세법인 창립 51주년!

ABOUT WRITERS

WHERE IS GRACE CHANG?

 **봄을 기다리며**



장승희

대표 관세사

가만히 귀대고 들어보면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
봄이 온다네 봄이 와요. 얼음장 밑으로 봄이 와요.

...

'봄노래' - 윤석중(1911-2003)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흐르는 시간에 따라 계절도 바뀌어 갑니다.
북극에서 내려왔다는 극한한파로 두텁게 얼었던 한강의 얼음도 이젠 모두 녹았습니다. 꽁꽁 얼어있는
깊은 산속 개울물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봄은 가까운 곳에
와있습니다.

계절의 봄소식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들 삶에 봄은 어느 만큼이나 와있을까요?

지난달 2월 26일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내의 휴전(Cessation of Hostilities In Syria)**을 **결의**하고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3백 5십만의 난민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반가운 봄소식입니다.

2015년 12월 마침내, Saudi Arabia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성취**한 것은 '아랍의 봄'이후 4년만에 이루어진 봄소식입니다.

전세계에 급속하게 퍼지는 **Zika virus**의 위험을 깨닫고 상·하수도 시스템 등 자국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발표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임신부들을 안심시키는 봄소식입니다.

이란과 서방국들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어 이란경제제재가 해제**되는 것도 봄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2월 28일 실시된
총선에서 Reformist인 Hassan Rouhani의 연합당이 압승을 하였습니다. 봄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꽁꽁 얼어붙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20년에 가까운 내전이 끝나 1992년 이후 잠잠하던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는 다시 내전이 시작되고 있다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웃나라인 Malawi로 피난을 떠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민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봄소식을 짓밟는 소식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발"이라고 공표
하였습니다. 얼음장은 더욱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북한간의 공식적인 민간통로인 **개성공단이 가동중단/폐쇄**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던 120여개 기업은 8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남북을 잇는 **민간의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달 Cover Story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입니다. FTA News는 '한-중 FTA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위한
정보 안내이며 Voices from the Fields는 '반덤핑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생맥주와 용기는 함께 분류될 수 있을까?'는
품목분류 이슈로서 상식을 키우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봄을 기다립니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꽁꽁 얼어붙은 이 땅에 봄이 올까요? **5000만이 힘을 합해 따스한 온기를
부으면** 얼음이 녹을까요?

봄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손을 모으고 귀를 기울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Cover Story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

1. 개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2008 년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적 소비는 세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한데,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특정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그리고 실물이 아닌 시간·기술·자금·재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소비는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데, 이용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단기 대여를 통해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제공자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 수익 발생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지난 2013 년 불과 51 억원 규모에 그쳤

지만,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저렴한 거래 비용을 기반으로 매년 8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2.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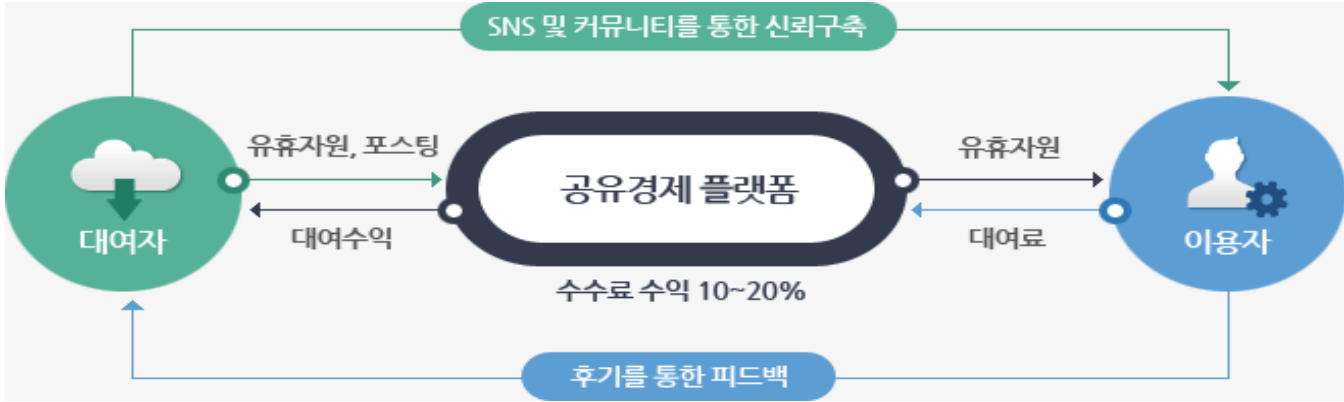
공유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B2C 와 P2P 로 구분될 수 있다. B2C 모델은 특정의 사업자가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렌탈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P2P 모델은 상품을 소유한 사람과 이용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중개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는 차량 공유 회사인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인데 이들은 각각 B2C 와 P2P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1] 공유경제의 핵심요소

[출처 - 공유경제정보센터]



[출처 - 공유경제정보센터]

[그림 2]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수익 매커니즘

2008 년 설립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누적 이용객이 4 천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현재 가치는 240 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4 천여 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메리어트의 210 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다 .그리고 올해로 창업 6 년차를 맞이한 우버의 2015 년 평가액은 500 억 달러에 달한다.

다시 말하면 젊은 소비층이 공유경제에 익숙해지고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 10 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기업은 공유기업의 위협을 직시하고 이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공유경제의 향후 전망

현재 공유경제는 기존 기업을 위협할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유경제는 현재 젊은 층의 소비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현
leedh@customsservice.co.kr

FTA News

홍콩 경유 수입물품의 한-중 FTA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

지난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업체는 물론,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업체들 역시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상품요건, 원산지증명서요건, 직접운송요건 등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가 중요하다. 한-중 FTA 비당사국인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운송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록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운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중국산 물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업체는 단순 경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직접운송요건

직접운송요건이란 물품이 제 3국을 경유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원산지요건을 말한다. 제 3국을 경유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한중 FTA에서도 이러한 직접운송을 일반원칙으로 두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 3국에서 하역, 화물의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보존을 위한 공정 외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3개월(불가항력적 상황인 경우 6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제 3국 경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제 3국에서의 거래·소비 행위는 금지된다.

구비서류

비당사국(예: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한-중 FTA 직접운송요건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중 FTA 협정 3.14 조)

○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 (예: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Through B/L)¹ 또는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업자 포함)가 전 구간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여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

○ 보관 또는 컨테이너를 적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운송서류 및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증빙서류 (예: 보세구역입출고내역서, 환적증명서, 단순 경유원산지증명서, 비가공증명서 등)

*상기 예시서류는 한-EU, 한-ASEAN,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한-중 FTA 와 유사한 직접운송 원칙을 규정하는 협정과 관련된 행정심판사례, 관세청 이행지침² 등을 근거한 것이다.

실무 상 유의점

한-중 FTA 협정문에는 단지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및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증빙서류라고만 언급할 뿐 직접운송을 증명할 구체적인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수입되는 물품도 추후 관련 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서류 미비로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세관 등 일부 세관에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홍콩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을 공지하였으며, 동 공지에서 통과선하증권 및 비가공증명서를 직접운송 원칙 증빙서류로 간접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선하증권보다는 물품인수지·환적지 등 운송 과정에서 통과할 지역이 명백히 기재된 통과선하증권을, 환적

증명서나 보세구역입출고내역서 등의 서류보다는 비가공증명서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 통과나 환적의 경우라도 통과선하증권 및 비가공증명서 모두를 제출하여 직접운송요건 위반으로 인해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³

통과선하증권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경우 및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컨테이너 또는 벌크화물로서 7 일 이내 환적되는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의 발급이 불필요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 ①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컨테이너 또는 벌크화물을 7 일을 초과하여 환적하는 경우
- ② 화물 통합, 재포장 또는 컨테이너에 적출입 되는 화물의 경우
- ③ 컨테이너를 개장하거나 컨테이너 Seal 을 파손한 경우 및 벌크화물의 포장을 손상했거나 재포장한 경우

비가공증명서의 발급기관은 홍콩세관이며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해관 환적화물 사무소와 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롤센터에서 교부한다. 홍콩에서 환적, 보관 가능한 화물터미널 은 Kwai Ching Container Terminals, Super Terminal One 등 특정 터미널에 한하며, 신청 시 서류 심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전형재
(hjjeon@customsservice.co.kr)

¹ 최초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증권으로서 물품 인수지부터 환적지, 도착지까지 운송과정에서 통과할 지역 등이 모두 기재된 운송서류를 말한다.

² 홍콩 국경 도착 시 제출하는 재화청단과 홍콩발행 항공화물 운송장은 단순 경유 사실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출처 -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관세청 지침]

³ [출처 -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홍콩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Voices From The Fields

반덤핑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I 덤핑마진 계산방법

최근 우리나라의 주력상품에 대해 경쟁국의 반덤핑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반덤핑(Anti-Dumping)조치에 관해 1. 덤핑마진 계산방법, 2. 산업피해 조사방법, 3. 덤핑수입 피해의 인과관계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2015.12), 미국의 한국 철강 3 사에 대한 덤핑최종판정예정(2016.05), EU 의 중국· 러시아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착수(2016.02) 등은 다자간 무역체계에서 각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다. WTO 체제 하의 반덤핑 조치는 각 국의 FTA 의 체결로 경제영토가 확장되는 현재의 무역환경에서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덤핑 조치는 **수입당국에 덤핑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는 수출국의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그 상품의 수출가격(Export Price)을 계산 및 이를 비교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을 덤핑수입품의 결과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덤핑마진이란 정상가격이 수출가격을 초과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 우선적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물품을 정의하고, 모델을 명확화하여,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들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이뤄져야 하며,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은 아래와 같이 결정 및 조정된다.

◎ 수출가격(Export Price) 결정

수출가격은 수출자가 보고한 실제가격을 토대로 계산하며, 인보이스 가격은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물품의 원가, 운임, 보험, 신용비용, 수리유지비 등을 포함하고, 판매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조정수출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리베이트와 일반비용(국내운송비 및 보험료, 해상운송비 및 보험료, 신용비용)은 총수출가격에서 차감된다.

◎ 정상가격(Normal Value) 결정

정상가격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이며, 조사대상물품이 수출국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상가격의 계산은 수출국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예외: 동종물품의 거래가 없는 경우, 정상적 거래가 없는 경우, 특수한 시장상황, 국내판매량이 적은 경우). 정상가격은 고객에게 판매된 제품 그 자체의 순가격이며, 수출가격과 공정하게 비교되어야 하므로, 리베이트 및 판매비용, 세금(관세환급, VAT)을 총 수출가격에서 차감하여 재조정한다.

반덤핑협정은 덤핑마진 계산시, 1.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의 비교, 2.개별 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의 비교, 3.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의 비교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만 이용 가능)방법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이 계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적인 방법인 1.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의 비교를 통한 덤핑마진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덤핑마진=(가중평균정상가격-가중평균수출가격)/가중평균수출가격

가중평균 수출가격은 각 조정된 수출가격에 해당되는 수량(물량)을 곱한 결과를 합한 후 100 으로 나눈 값이며, 가중평균 정상가격은 각 조정된 정상가격에 해당 수량(물량)을 곱하고 각 결과를 더한 후 100 을 나누어 구한다. 가중평균 방식은 전체 수출량에서 비중이 높은 판매에 비례하여 영향을 준다.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마이너스 마진이 발생하여 덤핑마진은 없는 것으로 가중평균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제로마진으로 치환되는 방법을 제로잉(zeroing)이라고 하며, 몇몇 회원국이 관행으로 제로잉을 채택하나, 이는 **반덤핑협정에 불일치** 한다.

일례로 미국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수입된 전체물량이 아닌 **특정시기, 특정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마진을 산정(표적덤핑: targeted dumping)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반영하여 상쇄한 결과로 산정하게 되어있으나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 적용(제로잉: zeroing)하여 한국정부는 2013 년 8 월 WTO 에 제소하였다. WTO 분쟁해결기구(미국)의 새로운 덤핑마진 방식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패널 보고서를 채택(2015.11)하여 협정위반임을 명시하며, 이는 국가간 덤핑마진계산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내포한다.

반덤핑조치를 위한 덤핑마진계산 방식은 협정에서 제시한 방법 중 각 국가별로 선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판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반덤핑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무역규제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품목에 대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또한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반덤핑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덤핑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WTO 반덤핑 가이드북-주디스 차코·요한 휴먼·조르주 미란다 지음

*덤핑(Dumping):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국가 간 가격차별현상으로, 덤핑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겪을 수 있어 불공정 무역으로 취급하여 WTO 협정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 시 반덤핑조치가 가능함.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 51~56 조에 덤핑방지관세를 수용.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차 미 정
(mjcha@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환급대상물품의 정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및 환급대상 관세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할 때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여러 건 교부한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

□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주요 개정내용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24조의2 신설)

1) 관세 환급 대상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정함.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을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정함.

□ 세액 경정 시 납세고지서 통합 교부(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가산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적은 경정통지서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여러 건 교부되고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제251조의 2 신설)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함.

3. 시행일자 : 2016. 2. 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s Opinions>>

해외직구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의 단순변심 등의 사유에 의한 반품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계약과 상이한 물품(기존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제106조의2를 신설하였으며(2015.12.15.),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조항 신설. 이에 따라, 자가사용을 위해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 계약과 상이하지 않은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②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하였고 ③ 시행령에서 규정한 환급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의 전액(일부만 수출하는 경우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 수출 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정한 물품이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 등이 지연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를 보완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 개정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기간이 연장되는 물품 및 수출 등의 지연사유(제9조의2 신설)

「대외무역법」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 무역 상대국의 전쟁·사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출 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제30조제2항)

지금까지는 관세 등의 과다환급일부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과다환급을 받은 자가 과다환급일부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시

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과다환급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가산금 제도를 개선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병 관
(bkpark@customsservice.co.kr)

3. 시행일자 : 2016. 2. 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s Opinions»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과다하게 환급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수출자가 과다환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시 가산금이 면제되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사 및 수출업체 등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사유로 인하여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례로 알아보는 품목분류 ⑥

생맥주와 용기(PUB KEG)는 함께 분류될 수 있을까?

수입물품이 포장되어 제시될 때 어떻게 품목분류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물과 포장재를 함께 분류하여야 할지 포장재는 별개로 분류해야 할지 판단을 내릴 때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품목분류 협의회 결정사항이 있어 소개합니다.



1. 물품 설명

플라스틱제 용기에 담긴 생맥주로, 용기는 ① Outer shell, ②

<물품 이미지>

<물품 구성요소>

Inner bottle, ③ Outer lid, ④ Filling lock 으로 구성되어 있다. Inner bottle 에 맥주를 주입한 후 Outer shell 에 삽입하고 Filling lock(마개)로 막은 후 Outer lid(뚜껑)을 덮는 순서로 조립하여 포장한다.

2. 결정 세번

용기 중 Inner bottle 과 Filling lock 은 맥주와 함께 제 2203.00-0000 호에 분류되며, 용기 중 Outer shell 과 Outer lid 는 따로 제 3923.30-0000 호에 분류된다.

	HS	품명	HS	품명
	2201	물	3901	에틸렌
	2202	음료	3902	프로필렌
Inner bottle →	2203	맥주	... (생략) ...	
Filling lock	2204	포도주	3921	기타 판·쉬트
	2205	베르mut	3922	위생용품
	2206	기타의 발효주	3923	포장용기·마개 ← Outer shell Outer lid
	2207	주정	3924	식탁·주방용품
	2208	기타의 주류	3925	건축용품
	2209	식초	3926	기타제품

3. 결정 이유

물품의 포장용기 분류에 관하여 통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칙 5(나)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 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Inner bottle 은 PET 재질로 내구성이 낮으며, Filling lock 과 함께 맥주가 직접 담기는 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내용물(맥주)과 함께 분류하여야 한다. 반면에 Outer shell 과 Outer lid 는 HDPE 재질로 내구성이 높으며, 제조자가 제시한 내용연수와 사용 횟수, 반환 시 세척 및 재사용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내용물(맥주)과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 미국 용기 제조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uter shell 의 내용연수는 5 년, 사용횟수는 50 회이며, 용기가 반환되는 경우 Outer shell 과 Outer lid 는 세척 후 ‘재사용(re-used)’되나 Inner bottle 과 Filling lock 은 ‘재활용시설(recycling facility)’로 보내짐

[출처 - 품목분류 협의회 결정사항 (결정 15-09-001)]

품목분류 협의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내용물과 함께 제시된 포장용기는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경우에는 별도의 포장 용기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포장용기의 재질 및 내구성을 살펴 재사용이 가능할 지, 1 회용 용기 에 더 적합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된 뒤 품목 분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혜 란

[\(hrkim@customsservice.co.kr\)](mailto:hrkim@customsservice.co.kr)

신한 소식

신한관세법인 창립 51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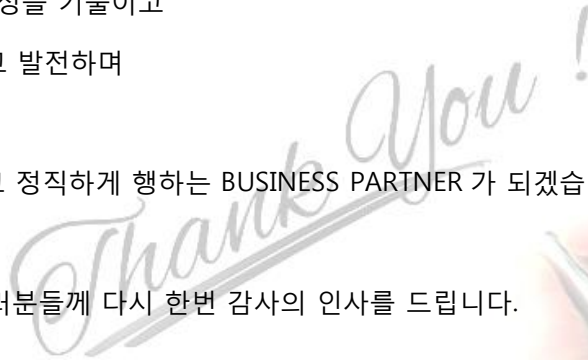
고객사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백년기업을 위한 반환점을 돌고 첫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한관세법인은

- **PASSION** : 초심의 마음으로 매사 정성을 기울이고
- **INNOVATION** :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하며
- **TEAMWORK** : 혼자가 아닌 함께,
- **INTEGRITY** : 고객에게 책임감을 갖고 정직하게 행하는 BUSINESS PARTNER 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주시는 고객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객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



이 동 현 관세사
leedh@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 HS 품목분류 컨설팅
-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자문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

FTA News -

홍콩 경유 수입물품의
 한-중 FTA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



전 형 재 관세사
hjeo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지사
- 기계류/전기기기 통관 및 품목 분류 전문

Voices From The Fields -

반덤핑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I
 덤핑마진 계산방법



차 미 정 관세사
mjcha@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C/S팀
- 前 신한관세법인 서울본사 통관본부, 컨설팅본부
- 前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파견근무
- 원산지 관리자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박 병 관 관세사
bk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前 무역상사 해외영업부 (2004-2012)
- 섬유/의류 통관 및 품목 분류 전문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원산지검증 자문 컨설팅

사례로 알아보는 품목분류 ② -

생맥주와 용기(PUB KEG)는
 함께 분류될 수 있을까?



김 혜 란 관세사
hr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외환 컨설팅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 원산지관리사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